

# 대학원 생명융합학과 운영 내규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생명융합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생명융합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 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생명융합학과 소속 교수들은 생명융합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 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한의학, 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 융합연구와 임상 활용 실무에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

제5조 (과목개설) 한의학, 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 융합연구와 임상 활용 실무에 적합한 교과목을 개설하며,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

제6조 (교·강사 배정) 각 교과목은 생명융합학 교육 및 연구에 적합한 교·강사를 배정하며,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

##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

##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시행 및 면제기준)** 학칙에 따라 학위취득 자격시험으로 종합학력시험을 시행하되,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최대 2과목까지 면제한다.

1. 학위논문심사 완료 전까지 게재되었거나 게재확정된 논문 1편당 2과목 면제.
1. 학위과정중 참가한 전국규모 학술대회 발표 1회당 1과목 면제.

**제9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 : 종합학력시험 및 연구윤리이수)** 학칙에 따라 시행되는 종합학력 시험의 시행 및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합학력 시험은 석사과정의 경우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단,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음). 합격점수는 과목당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 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한다.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1. 내국인 학생은 영어, 외국인 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 중 선택하여 외국어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단 외국인 학생의 모국어가 영어일 경우 한국어를 택하여야 한다).
2. 영어 공인어학성적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거나 영어권 국가에서의 수학(연수) 경험 등을 통하여 영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① TOEFL : 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이상
  - ② TOEIC 750점 이상
  - ③ TEPS 600점 이상
3.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능력 졸업기준은 토픽4급 이상으로 한다.

##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석사학위 취득은 석사과정(학위논문)과 석사과정(연구논문 대체)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제7장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석·박사과정 중 혹은 수료 후 적절한 시기에 지도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제14조 (예비발표) 학위논문심사 최소 한 달 전까지 예비발표를 진행한다.

제15조 (논문심사위원)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

제16조 (석사과정 연구논문-논문대체 심사방법 및 절차)

1. 석사과정에 한하여 학위논문 대신 다음 중 1을 선택하여 논문대체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① 50쪽 분량 이상의 연구논문(논문대체).
  - ②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논문 1편 게재(단독논문 또는 공동논문의 경우 제1저자).
2. 연구논문 심사는 심사위원 2인(지도교수 당연직 심사위원)이 한다.

제17조 (석사학위 연구논문 제출) 학위과정 4학기 말에 (전기-6월말, 후기-12월말) 심사 판정지에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서명을 받은 후 소프트카바(흰색)로 제본된 연구논문 1부 및 국문 파일을 학과로 제출한다. 제출된 연구논문은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다(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

##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0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